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
발 의 자 : 박상혁 · 김우영 · 정준호
이해식 · 한민수 · 진선미
조승래 · 문정복 · 박지원
김영환 · 김주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.

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(致富)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 법무부 예규인 「보관금품 관리지침」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,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.

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,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

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·보관하도록 하되,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(안 제25조 및 제27조).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휴대금품을”을 “휴대품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준 금액을 합산한 금액(이하 “보관금”이라 한다)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보관금의 한도는 400만원으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·보관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때 그 초과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② 소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 중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어지게 되는 때까지는 수용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해당 수용자에게 금원의 전달을 허가할 수 없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5조(휴대금품의 보관 등) ① 소장은 수용자의 <u>휴대금품을</u> 교정시설에 보관한다. 다만, 휴 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 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 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5조(휴대금품의 보관 등) ① ----- <u>휴대품을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 대금과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 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 게 건네준 금액을 합산한 금액 (이하 “보관금”이라 한다)을 교 정시설에 보관한다. ④ 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보관금의 한도는 400 만원으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
<u><신설></u>	

<u><신 설></u> 제27조(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)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략)	<u>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·보관한다.</u> ⑤ 제4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제27조(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넘는 때 그 초과분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